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 (4단계 발령으로 인한 집합금지) 에 따른 모델하우스 운영 (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 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홍보관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팽택 「고덕하늘채 시그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 홍보관**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 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1.02.26)** 된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견본주택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하며, 일부 동·호수 중 추가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는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금액이 발생합니다.(추가품목 유상옵션 선택불가)

1. 주택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주택홍보관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분양 상담전화(031-664-3325)**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홍보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아래의 「I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V.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주택홍보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시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주택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주택홍보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홍보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분양 상담전화(031-664-3325)** 및 **청약홈 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일내방객 제한 및 사전관람예약 신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방문예약제 운영하며 예약을 통한 일일 내방객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주택홍보관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홍보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택홍보관 사전 관람		정당 당첨자 및 사전서류접수	
	예약 신청 기간	관람 가능 기간	예약 신청 기간	제출 가능 기간
일정	2021.08.03.(화)-2021.08.13.(금)	21.08.04(수)-2021.08.14.(토)	21.08.18(수)-2021.08.26.(목)	21.08.19(목)-2021.08.27.(금)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주택홍보관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26.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 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 년간

■ '20.04.16. 이전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6)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1순위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의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6) 현재 해당 건설지역(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1년 01월 26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제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제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를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부(국군복지단)는 대상 단지 주택공급 물량의 3%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주체에 추천,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통지해야 함.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최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godeok-ihanulch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지역인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규정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기 적벌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역 하늘채 시그니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청약호실 세대 관람은 주택홍보관에서 방문예약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 1순위 해당 (평택시 6개월이상 거주)	일반 1순위 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2021년 08월 19일(목) ~ 2021년 08월 27일(금)	계약체결 21년 08월 30일(월) ~ 21년 09월 01일(수)
일 정	2021년 08월 06일(금)	2021년 08월 09일(월)	2021년 08월 10일(화)	2021년 08월 17일(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주택홍보관 (10:00~16:00)	주택홍보관 (10:00~16:00)
장 소	<p>■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p> <p>- PC : www.applyhome.co.kr</p> <p>- 스마트폰 앱</p>				<p>■ 주택홍보관</p> <p>-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p> <p>※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p> <p>※ 사전서류검수 대상자에 대한 서류접수 방법은 별도공지 예정</p>	<p>■ 주택홍보관</p> <p>-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p>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0.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32716호(2021.07.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55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5층, 26개동, 총 1,884세대 중 조합원 1,431세대, 선분양(일반분양) 437세대를 제외한 후분양(일반분양) 16세대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총 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세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1000557	01	059.9490A	59A	59.9490	20.8721	80.8211	1.9006	31.2218	113.9435	40.9570	9	9	-
		02	059.9717B	59B	59.9717	21.0097	80.9814	1.9013	31.2336	114.1163	40.9724	6	6	-
		03	084.7048	84	84.7048	27.8693	112.5741	2.6854	44.1148	159.3743	57.8700	1	1	-
	합 계											16	16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주택형	세대수	동	호	분양가격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시	계약체결일+30일
59A	059.9490A	9	106	2504	142,350,000	222,650,000	365,000,000	36,500,000	328,500,000
			107	1703	142,350,000	222,650,000	365,000,000	36,500,000	328,500,000
			108	602	139,620,000	218,380,000	358,000,000	35,800,000	322,200,000
			108	902	139,620,000	218,380,000	358,000,000	35,800,000	322,200,000
			108	1404	140,985,000	220,515,000	361,500,000	36,150,000	325,350,000
			118	704	139,620,000	218,380,000	358,000,000	35,800,000	322,200,000
			118	1204	140,985,000	220,515,000	361,500,000	36,150,000	325,350,000
			126	502	136,695,000	213,805,000	350,500,000	35,050,000	315,450,000

			126	1502	140,985,000	220,515,000	361,500,000	36,150,000	325,350,000
59B	059.9717B	6	116	1003	136,890,000	214,110,000	351,000,000	35,100,000	315,900,000
			117	702	136,890,000	214,110,000	351,000,000	35,100,000	315,900,000
			117	1202	138,255,000	216,245,000	354,500,000	35,450,000	319,050,000
			119	703	136,890,000	214,110,000	351,000,000	35,100,000	315,900,000
			119	1803	139,620,000	218,380,000	358,000,000	35,800,000	322,200,000
			121	1402	138,255,000	216,245,000	354,500,000	35,450,000	319,050,000
84	084.7048	1	119	601	183,495,000	287,005,000	470,500,000	47,050,000	423,450,0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자)주택형	059.9490A	059.9717B	084.7048
약식표기	59A	59B	8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자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품목(유상옵션)제외 금액임.
-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일부 중 추가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가 있으며, 추가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금액이 발생함.
- ※ 추가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 (2021.02.26.) 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2021.02.26.) 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중 추가 옵션 (시스템에어컨, 불박이장) 시공 된 동호수가 있으며, 시공된 옵션품목을 변경 및 철거를 사업주체에서 해줄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2.26.)**된 아파트이므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건물)가 가능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 된 아파트로써 납부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2.26.)된 아파트로써 중도금 대출을 사업주체에서 앞선 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잔금은 상기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주택 담보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주택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본 주택의 해당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자촉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매수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산결과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설정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 중 입주자자촉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 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지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지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지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지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p>-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p> <p>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p>
--	---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7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 가 아닌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는 2순위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표1]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4.4.1.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분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접수입력의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지도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평택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 (청약납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 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 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 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 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를(일반공급 세대수 300%)에 미달할 경우 자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청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1.08.06.(금)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1.08.09(월) 08:00~17:30		
	2순위	2021.08.10.(화)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홍보관 비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
	○		주민등록등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경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며 "상세"로 발급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인감증명서(본인발 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서류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차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지속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산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순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8.17.(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8.30.(월)~2021.09.01.(수)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55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설정될 수 없음.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홍보관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godeok-ihanolch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8.17(화) ~ 2021.08.26(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8.17.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1.08.30(월)~2021.09.01.(수) 3일간, (10:00~16:00)	커뮤니티센터	031-664-3325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정보관 제출(주택정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805901-04-35052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805901-04-35053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설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201동 1502호 계약자 -> '2011502홍길동' / 203동 703호 계약자 -> "2030702홍길동")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주택정보관에서 계약금 현금 수납 불가)
	○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서류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사항 포함)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차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 됨.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제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한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1.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며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빗공해(단지내 도로 설치로 인한 자동차 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준공완료 된 아파트로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중도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1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 : 공급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자로부터 + 30일 (단, 잔금 완납 (공급금액+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품목 (유상옵션이 설치된 계약자에 한함))일이 입주지정기간보다 빠른 경우 입주 가능)**
- 본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대금으로 인한 문제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시 시행 및 사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주거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들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 (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시 세대물 청소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키포출 세대는 키포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포출 세대 부담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2개소), 어린이집/경로당(2개소), 어린이 놀이터(4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근린생활시설(2개소), 주차장 등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하자보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A	11,000,000	1,100,000	9,900,000
59B	10,300,000	1,030,000	9,270,000
84	14,000,000	1,400,000	12,6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805901-04-35054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2.26)**된 아파트로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에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별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해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품목(유상옵션)

(1) 추가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동·호수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A	108동 602호	2,784,000	278,400	2,505,600	시스템 에어컨 기본형 2대 설치(거실+침실)
	118동 1204호	3,642,000	364,200	3,277,800	시스템에어컨 기본형 2대 설치(거실+침실)/ 침실2 불박이장 설치
59B	117동 702호	3,752,000	375,200	3,376,800	시스템에어컨 기본형 2대 설치(거실+침실)/ 침실2 불박이장 설치
	117동 1202호	2,784,000	278,400	2,505,600	시스템에어컨 기본형 2대 설치(거실+침실)
	121동 1402호	2,784,000	278,400	2,505,600	시스템에어컨 기본형 2대 설치(거실+침실)

(2) 추가 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유상업선 납부계좌	국민은행	805901-04-35054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1.02.26.)된 아파트로서 상기 표의 동호수에 추가 품목(유상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 함
-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추가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서 체결해야 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품목을 설치요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추가 품목에 대하여 설치 해드리지 않음.
- 상기 추가 품목은 공시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Ⅶ	단지 여건 사항
----------	-----------------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택시 고덕면 궁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조성공사(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포함) 지연 시 본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지 서측 SRT 철도운행 및 동측 40번 고속도로의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고덕공공통합하수처리시설), 공원(녹지)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수림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혹은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공원 면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통학 학교는 인근 효덕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평택중학군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배치가 가능함.

■ 단지 내부 여건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성능, 상품개선,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및 지상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 복도 포함), 단지 주변 기반시설(완충녹지, 도로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의 형태, 크기, 위치 등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크기,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방음벽(하부 옹벽 포함)은 현장 여건 및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기의 실외기 시설물은 일조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지내도로선형, 시설물의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시 외관개선,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건축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축벽(문양포함), 동 출입구, 발코니앞 장식물, 피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쓰레기보관소/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의 규모, 형태, 배치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우수 배관은 단지 내 레벨에 의해 일부 구역은 우수중계펌프장을 통해 자연배수구역으로 강제배수하며,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B동)의 우수배출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우수패키지 PIT에서 강제 배수하며, 113동 옥외 배수 맨홀로 자연 방류합니다. 이에 대한 구조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구조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의제기 측이 책임진다.
- 단지 내 우수중계펌프장의 배기 연도가 114동 1,2호 외벽 구조체에 매립되어 있음.
- 기반시설 우수 배관 경로가 단지 내를 관통함에 따른 준공 후 유지보수 공사시 단지 내 일부 공사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발코니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 발코니의 경우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호수, 외벽로고사인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과정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공급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및 수공간,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주민공동시설, D/A(설비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우수중계펌프장, 빗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SUS재질)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않)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항공기 및 기차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인·허가조건 변경, 각종 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5동 옥상층에는 아파트 TV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 및 규격/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103동, 105동, 107동, 114동, 118동, 125동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103동,113동,126동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층 변화 구간세대는 구조물 생성으로 인해 침실1 및 침실2의 커튼박스가 일부 줄어들며, 안방 발코니에 보가 노출되어 단차가 발생됨. (108동 2303호, 110동 2302호, 111동 1502호, 116동 2202호, 117동 2402호, 119동 2403호, 122동 1904호, 124동 1201호,1502호, 125동 1401호)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차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동주택 등)의

-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음.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단지 서측 및 북측 도로 소음 등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될 예정이며, 디자인, 높이, 설치 구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방음벽 설치로 인한 일부 세대 조망, 일조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해 단지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부출입구 상가 주차장 진입 차량으로 인해 입주민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비상차량(택배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포함)에 의한 보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하며, 실시공사 현장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의 동의 없이 그 규모나 배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옥상 신축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1층의 레벨은 1층 세대의 사생활간섭 최소화등의 사유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코어(Elev.Hall 및 계단실) 평면은 동별로 상이하며, 일부 코어의 경우 Elev.Hall 및 계단실에 외부창호가 없으므로 환기 및 채광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층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공사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주동의 엘리베이터는 기계실이 있는 타입으로 시공예정이며,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낙하물 방지 캐노피 설치에 따른 구조물에 의한 외부 조망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세대 부근 및 외부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됨
- 단지에 설치 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보안등,조경용 조명,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전유부(세대부 및 공용시설 등)와 근린생활시설 간에 시설 간섭(배관경로 이용, 시설의 공용배치)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고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외관의 개선,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규격, 수량, 디자인 및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는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의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관련비용 등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 및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식재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문주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 차량 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폭은 11m, 지하주차장의 차로폭은 7.5m로 구성되어 있고, 차로(출입구)의 높이는 최소 2.3m로 계획되어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Ⅷ

설계관련 주요사항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발코니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 초과발코니 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옵션 천장형 에어컨 공사를 제외한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의 설치공사는 코오롱글로벌 공사분이 아님. [코오롱글로벌 공사분 : 냉매배관 + 냉매배관박스 공사에 한함.]
- 세대 내에는 냉매매립배관이 전실(거실+침실)에 설치됨.(단, 냉매배관 박스의 위치 등은 본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공사 시점에 의해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경로가 세대로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별도 에어컨 설치시 실별 실외기 설치 여부 및 용량에 따라 실외기 (일반적인 높이의 실외기) 설치하여야 함.
-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시 실외기실의 규격을 고려하여 실별 적용 실내기의 용량 및 대수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장치의 내부 필터는 일정한 주기로 교체해야 효율적(소음 및 성능 등)인 사용이 가능하며, 입주자 교체 자재임.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름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 등)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세대내 창호의 설치위치, 크기, 사양(유리사양, 창틀디자인, 손잡이, 루버형태, 재질), 색상, 디자인, 제조사, 문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창은 외관 디자인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곳 상부에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상 (은 성분)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을 위한 입상배관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함을 인지함
- 건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바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후 계약하여야 함
- 가구금속 손잡이류의 색상은 본공사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 가변형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기둥 및 구조벽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폭이 창호보다 넓지 않고 같게 설치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는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시 태그가 불필요한 프리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출입문 태그용 보조RF카드는 세대당 4개가 지급됨
- 주택형 및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세대내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유리난간의 제조사, 크기, 형태, 재질, 사양, 접합방식,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제조사, 형태, 사양, 재질, 높이, 크기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의 일부부위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실, 세면기, 양변기, 욕조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실외기실 내부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시 욕실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실시공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바닥은 타일로 마감됨
- 전 세대 안방 파우더룸 진입구간에 슬라이딩 도어는 설치되지 않음
- 입주후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본공사분에 대하여 찍힘, 파손등의 하자발생시 귀책사유는 인테리어업체에 있음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환결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고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층 변화 구는 구조물 생성으로 인해 침강세대실1 및 침실2의 커튼박스가 일부 줄어들며, 안방 발코니에 보가 노출되어 단차가 발생됨. (108동 2303호, 110동 2302호, 111동 1502호, 116동 2202호, 117동 2402호, 119동 2403호, 122동 1904호, 124동 1201호,1502호, 125동 1401호)
- 침실1(안방)과 발코니1 사이의 분합창은 이중창으로 시공됩니다.
- 59B 세대의 욕실2(부부욕실)의 문짝은 샤워부스쪽으로 열리며, 스토퍼가 설치되어 90°만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E-stone, 천연석,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바람(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등 수준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 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패턴이 있을 수 있음
- 본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내부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젠다이, 주방상판 및 벽체, 화장대 상판 등에 사용된 천연석 및 인조대리석 등 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자재 특성상 커팅타일 기준으로 벽, 바닥 타일 사이즈 및 메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예:타일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세대 아트월 타일 및 공용부 홀 등의 벽체 타일은 타일본드로 시공하며, 줄눈은 시공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차 설치개수 (필요시)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전동기 (단, 0.7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 전력자동 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열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 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시)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본 인증서는 해당하는 곳에 표기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평택시 고덕면 공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인증번호	18-주-에-1-0546
준공연도	2021년 05월 21일	평가자	김지찬
주 소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공리 52-2리원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건 면 적	172780.6894(㎡)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모아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90.7	1	48	33.4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제				56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실제				64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7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6.7	87.2	67.7	18.2
급탕	30.7	35.5	26.4	7.2
조명	13.4	13.4	36.7	6.3
환기		3.5	9.7	1.7
합계	90.7	139.6	140.5	33.4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인증 등급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9월 11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평택시 고덕면 공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인증번호	제2018-1795호
건축주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	유효기간	2018.09.21.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 등급]	
주 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공리 52-2번지 일원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층 수	지하 2층, 지상 25층 / 1884세대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연 면 적	246,201.1833 ㎡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모아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 ☆ ☆

분야	비율
모바일용 및 교통	28%
에너지 및 환경오염	56%
재료 및 자원	44%
물순환관리	51%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60%

2018년 09월 21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인증실장 직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시) <개정 2016. 7. 27.>

- 공동주택명: 평택시 고덕면 공리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 신 청 자: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공리 52-2번지 일원
-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향충격을 차단성능	★★★★	20. 열제거 능력 향상	해당없음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21. 지진저항 능력 향상	★
3. 최대 간격벽의 차음성능	★★★★	22. 생활민원율	해당없음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물 조성	해당없음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열재에 환기성능 확보	★
		27. 자용면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 자연기후차량 및 주차도포의 적합성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1. 광향충격을 차단성능	★★★★
2. 과도한 지하개발 제한	해당없음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토공사 절감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3. 최대 간격벽의 차음성능	★★★★
4. 일조권 개선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에너지 성능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창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지반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R)의 사용	★★★★		
11. 지반소 자체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자용용기능지침의 보급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우수저수기 사용	★★★★		
18. 빗물 및 우수기 사용	★★★★		
19. 빗 사용용 모니터링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1. 광향충격을 차단성능	★★★★
2. 제연설비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내화성능	★	3. 최대 간격벽의 차음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9월 21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확장지 120g/㎡)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평면도 상의 지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지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아파트 유예시설(한국로드기업체),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 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시 대지권 설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홍보관 및 사업시행인가도서 (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사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 (아파트 대지) 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함.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주)유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아이비엔지니어링	(주)라인엔지니어링	
감리금액	₩ 4,080,567,900	₩ 500,500,000	₩ 913,484,64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비고
상호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코오롱글로벌(주)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44(3층)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코오롱타워)	
법인등록번호	102-82-60222(사업자등록번호)	110111-0036502	

■ 홈페이지 주소 : godeok-ihanulche.com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55(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 분양문의 : 031-664-332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주택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홍보관에서 확인 바랍니다.